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2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21 ~ 2022.2.27) -

February 2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확장가상세계 구현 주요 기반기술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20, 비상경제 중대본)의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업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 밝힘 이를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임 *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 국내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기술개발, 타사업간 연계 등의 여건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메타버스 기업 인수합병 펀드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 간 합종연횡을 촉진하고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성규모)** 기업 인수합병 펀드는 약정총액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므로 총 1,0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600억원을 출자하고, 400억원 이상의 민간 출자를 유도할 계획 ② **(주목적 투자)** 국내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규모확대 등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 * (투자분야 및 투자의무 비율)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 투자	2022- 02-22
산업통상 자원부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정부는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이에,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임	2022- 02-24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산업통상
자원부</td><td>
<table>
<tr><td colspan="3"><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td></tr>
<tr><td>비전</td><td colspan="2">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td></tr>
<tr><td>목표</td><td colspan="2">◇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td></tr>
<tr><td rowspan="3">10대 중점
추진과제</td><td>1. 시장 창출 지원 강화</td><td>①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②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③ 수요기반 시장 확보</td></tr>
<tr><td>2.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td><td>④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⑤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⑥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⑦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td></tr>
<tr><td>3. 활성화 기반조성</td><td>⑧ 제도적 기반 마련
⑨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제고
⑩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td></tr>
</table>
</td><td></td></tr>
<tr><td></td><td>

• **<u>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u>**

미국측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美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 및 논의함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 주요 내용으로는

① **57개의 품목·기술*의 對러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1전자(반도체), 2컴퓨터, 3정보통신, 4센서·레이저, 5항법·항공전자, 6해양, 7항공우주 등 7개 분야

② **對러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 적용**

* 단, 항공기 및 여객기 안전, 인도적 목적, 시민 통신 설비 및 동맹국의 러시아내 자회사 운영 등을 위한 對러 수출에 대해서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후 허가발급

③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하여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하여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

④ **특정 미국산 기술·SW을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 실시**

*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對러 수출시 美 허가 요구

※ 단,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consumer items)는 대상에서 제외하나, 최종용도가 군용인 경우 소비재에도 FDPR 적용 예정

※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對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일부 국가(EU, Five Eyes(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일본 등)에 대해서는 FDPR 적용을 면제하되, 향후 국가명 추가 예정

</td><td>2022-
02-25</td></tr>
</table>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발전과제와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함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함 회계산업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②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③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④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2- 02-21

<table>
<tr><th>부처</th><th>내용</th><th>일시</th></tr>
<tr><td>관세청</td><td>

•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한국판 뉴딜,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기업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22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함

* 세정지원: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원 대상**

– '21년 지원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더해, 금년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

< 지원 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대 상</th><th>제 외</th></tr>
<tr><td rowspan="5">성장 지원</td><td>① 신성장 기업</td><td>뉴딜기업, 혁신기업, 중소제조기업 등</td><td rowspan="8">[업체]
최근2년
관세범
(체납자)

[물품]
사전세액
심사대상</td></tr>
<tr><td>② 성실인증 기업</td><td>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부문), 모범납세자</td></tr>
<tr><td>③ 일자리 창출기업</td><td>채용계획, 고용유지, 일자리으뜸기업</td></tr>
<tr><td>④ 새싹 기업</td><td>'20~'22년 신설 업종</td></tr>
<tr><td>⑤ 수출기업</td><td>관세환급,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기업</td></tr>
<tr><td rowspan="3">위기 극복</td><td>⑥ 코로나 피해기업</td><td>매출액(수출입액) 감소 등 재난 피해 기업</td></tr>
<tr><td>⑦ 사회적 기업</td><td>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td></tr>
<tr><td>⑧ 위기·재난지역</td><td>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td></tr>
</table>

②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담보 제공을 생략해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 금융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활성화

– 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세관장이 직접 미환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 지급

</td><td>2022-
02-24</td></tr>
</table>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2.2.22. 시행)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時價)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02-22
대법원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4.21. 시행 예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②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 (제5조의2 신설) ③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 (제23조제1항제4호) ④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으로 변경함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⑤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함 (제29조제2항 신설) 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 (제33조제1항)	2022-02-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⑦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 (제36조제2항) ⑧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 (제45조제1항제1호) ⑨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 (제46조) ⑩ 제56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 준용 조항을 신설함 (제56조 신설) ⑪ 법률시행일과 맞추어 규칙도 2022년 4월 21일에 시행하도록 함 (부칙 제1조) ⑫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부칙 제2조) ⑬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 (부칙 제3조) ⑭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 (부칙 제4조) ⑮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기록으로 변경함 (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⑯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 (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대법원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2.7.1. 시행 예정)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제도의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 (제46조제1항제8호) ② 위 정보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함 (제59조제1호)	2022-02-2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안 제8조의3) ②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 (안 제8조의4) ③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 (안 제25조)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 (안 별표2) –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 (50만원 → 70만원) –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 의견 제시기간 : 2/22(화)~4/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로 제출	2022-02-2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도록 함 이에, 허가물질 지정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의 유해성, 국내 유통량, 사용자범위 및 해외규제여부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함)의 선정방법을 정함 (안 제3조 및 별표 1) ② 선정된 허가후보물질별로 화학물질 명칭, 유통량 규모, 해외 규제현황 및 의견수렴기간을 미리 공개하는 한편, 상세유통조사와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해성, 구체적인 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3조에서 제5조 및 별표 2) ③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제조·수입·사용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④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요청을 거쳐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안 제8조·제10조) ⑤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 지정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검토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1조·제12조) ※ 의견 제시기간 : 2/22(화)~3/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	2022-02-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남소를 우려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였음 그러나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허위 · 부실 공시로 인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 시행 이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8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제도로는 당초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 · 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	2022-02-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99조의13 신설)	2022-02-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7인)」**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104조제4항)	2022-02-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전세계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ESG 책임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중 ESG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은 7.4%에 불과하고 ESG 관계 부서가 없는 기업은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ESG를 고려한 경영을 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ESG 관련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수립·시행 및 관련 보고서의 신고·공시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지출한 컨설팅 비용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관련 경영전략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5 신설)	2022-02-22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벤처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신규 벤처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 생태계는 남성 중심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창업 비율은 26%에 달하지만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6%에 그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이에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5조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8호 신설)	2022-02-22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4(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8호 발간	
국회도서관	2/28(월) 10:00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식 개최	도서관 강당
	2/28(월) 14:00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국회도서관 미래로 NAL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8(월) 14:00	발전공기업-발전정비 중소기업 상생협약식 -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	김경만, 이동주,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2/2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7호 발간	
	2/25(금)	「헌법과 법제」 2022년 2월호 발간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2/22(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5호 발간 -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	
	2/22(화)	「현안, 외국에선」 제30호 발간 - 영국의회 차원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2/22(화)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4호 발간 -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등	
예산정책처	2/25(금)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2월호 발간 - 한국 ESG투자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 등 - 주택가격 결정요인 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2/21(월) 10:00	민주당 정권 경제성과의 허실: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